

대구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3111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종교단체 B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상무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권태형, 진광석

변론 종결 2020. 3. 25.

판결 선고 2020. 5. 13.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 6. 5. 선고 2018가단1095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5. 9. 접수제7509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6. 9. 30. 접수 제6487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83/440 지분과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 3. 5. 접수 제657호로 마친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 기재와 같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74. 3. 5. 접수 제65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6.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에 가입된 전통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다.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가 ① 경북 청송군 L 전 2,230평, ② M 대 381평, ③ N 전 153평, 4 ○ 답 156평, ⑤ P답 722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는 위 나항의 각 해당 모 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83㎡ 부분은 위 나항의 4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위 제4항 기재 토지는 2006. 12. 27. I 도로 83㎡와 다른 토지가 합병된 토지이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5.9. 접수

제7509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6. 9.30. 접수 제6487호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 3.5. 접수 제65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송군청 및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와 같은 목록제4항 기재 토지 중 83㎡ 부분은 원고가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83/440 지분에 관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위제4항 기재 토지와 관련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83㎡를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위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로 10년 넘게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라 함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국가가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적이 있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토지조사부를 미리 조사하였더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절차를 거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0다927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각 토지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앞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에 대한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정인섭, 판사 최미복

별지

목 록

1. 경북 청송군 F 대 331㎡
2. 경북 청송군 G 도로 136㎡
3. 경북 청송군 H 도로 208㎡
4. 경북 청송군 I 도로 440㎡
5. 경북 청송군 J 도로 74평. 끝.

